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련 451

제안년월일 : 2023년 3월 3일
제 안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문화적·예술적·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를 발전시켜 시민의 문화향유권 활대와 축제·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‘탄소중립·녹색성장’ 관련 축제를 우선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.

○ 다만, 향후 서울시 축제 운영에 있어 ‘탄소중립·녹색성장’을 지향하는 정책 마련의 당위성은 인정되므로, 이를 선언적 규정으로 반영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가. 서울시 지원 축제가 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지향하도록 수정함 (안 제16조제2항).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< 수정안 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(생 략)	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(현행과 같음)	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	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(생 략)	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